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허위 진술·감정 교사 처벌 및 고발〉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70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홍철 · 장종태 · 문진석 · 복기왕 · 한정애 · 정준호
허성무 · 이재강 · 한준호 · 신정훈 · 위성락 · 위성곤
장철민 · 박홍근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4. 12. 24.

3. 회 부 일 : 2024. 12. 26.

※ 의안번호 : 687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敎唆)한 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감정인을 교사(敎唆)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증인·감정인을 교사(敎唆)하여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도록 한 교사범에 대한 처벌 및 고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u>인정한</u>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4조의2(교사의 죄) 타인을 교사(敎唆)하여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5조(고발) ① ----- ----- ----- -----인정하거나, 증인·감정인을 교사하여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도록 하였다고 <u>인정한</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함)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벌칙으로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해당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형법」 제31조²⁾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교사범에 대한 처벌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근래 수사기관에서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도록 증인을 교사한 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고발³⁾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상임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였는데,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위증 등의 죄를 범한 증인·감정인

1)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감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2)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3) 참고로, 대법원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른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에 대해서는 고발이 가능하나 증인·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한 자에 대해서도 제15조에 따라 고발인 가능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교사범을 고발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증인·감정인을 교사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교사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고발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위증 등의 죄의 교사범에 대한 고발 가능 여부를 둘러싼 법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벌칙⁵⁾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위증 등의 죄의 교사범에 한정하여 고발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의 교사범은 고발할 수 없는 것으로 법해석상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죄의 교사범에 대한 고발 근거도 함께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같은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본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이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회증언감정법의 목적과 위증죄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고, 위증을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2018년 제364회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차장 ○○○이 허위 증언을 하여, 2019년 제371회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차장 ○○○을 고발하였으며, 차장 ○○○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음.

이후 차장 ○○○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의 피의자 □□□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고발이 필요(소추요건)하다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였음.

- 5)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벌칙규정

문 의 처
02)6788-5017

구성요건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 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 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 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 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 하도록 한 때	5년 이하 징역
제14조 위증 등의 죄	<u>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 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u>	<u>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u>